

대학원 중국어통번역학과 학사운영 내규

제정 : 2018. 2.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 및 시행세칙,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전형

제2조(지원 구비서류) 각 전공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학칙 등에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자는 원본대조하고 사본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3장 수업

제3조(이수 과목) 중국어통번역학과 교과과정은 “별표1”와 같다.

제4조(보충과목 이수대상자 및 과목 이수) ① 중국어통번역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의 전공 분야와 학부과정의 전공 분야가 상이하거나 지도교수의 평가에 의하여 보충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도 있다.

② 보충과목의 수강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보충과목의 결정 및 승인 등) ① 중국어통번역학과의 주임교수는 소속 전공교수와 협의하여 이수하여야 할 과목 및 학점범위를 지정하여 학기 초에 해당 학생을 수강지도 하여야 한다.

③ 중국어통번역학과의 보충과목 이수는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장 전공

제6조(전공) ① 중국어통번역학과의 전공은 한중통번역전공 1개를 운영한다.

제5장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제7조(외국어시험) 석박사통합, 석사, 박사생들은 일반대학원의 외국어 자격시험 규정에 준한다.

제8조(종합학력시험) 석사생들은 2과목, 석박사통합생들은 3과목, 박사생들은 4과목 종합학력시험을 실시하며, 종합학력 면제기준은 없다.

제6장 학위논문

제9조(논문의 작성) ① 중국어통번역학과는 한국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석사학위논문은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을 위주로 하되 중국어통번역학과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자유로이 선택하여 작성한다.

1. 통역·번역에 관한 학술적 연구

독창성을 가진 연구주제로서 관련 학계에서 인정되는 연구방법론 및 논문작성법 규칙에 따라 작성된 연구 논문이어야 한다.

2. 주해번역

목표언어로 번역 출판될 만한 학술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원천문헌을 번역하되, 번역자의 주해가 총 번역분량의 10분의 1이상을 첨하여야 한다.

(단순기사 모음이나 어록집 등 단편적인 내용의 편집번역물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역·번역 관련 특정 분야의 전문용어에 관한 연구

통번역 학술, 교육 및 실무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전문용어 연구로서 용어의 분류 방식, 번역술어의 조어방식, 의미의 재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경험적, 비판적 고찰을 포함하여야 한다(기출판된 전문사전류나 개인적용어집에 수록된 표제항목의 단순 재편집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논문분량은 A4용지에 Double Space(23행) 타자된 것 30매 이상이며, 작성방법은 규정에 따른다.

④ 공동번역논문도 가능하며, 이 경우 1호의 배수의 양 이상(6~70매)이어야 한다.

제7장 특화과정

제10조(특화과정 이수확인증) 중국어통번역학과는 특화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수확인증 발급을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주임교수는 특화과정 이수기준에 의한 자격시험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기타사항

제11조(내규변경) 국제대학원 학사운영내규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3.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제6장 학위논문에 대한 시행은 학칙 제38조 제2항 개정과 동시에 적용한다.